

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
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3개 법률의 법문 용어 중 “대차대조표”를 “재무상태표”로 변경함
(「상공회의소법」 제48조제1항,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60조
제2항 및 「전기공사공제조합법」 제30조제3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
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